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이연희·한민수·허종식

이정문 • 정성호 • 문진석

김남희 · 서영석 · 허 영

최기상 · 최민희 · 김정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

항).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8조, 제74조"를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	
지, 제40조, <u>제68조, 제74조</u> , 제	<u>제</u> 68조, 제74조, 제
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	<u>74조의2</u>
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	
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	
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	
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